

위임전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장의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위직에 위임하여 전결케 함으로써 각 전결권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 전결 사항은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4조(예외사항) ①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회장 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하위직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2009년 07월 16일 별표 개정)

제6조(문서의 대결) 회장의 결재 문서를 대결하였을 때에는 추후 회장에게 지체 없이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결위 또는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위 또는 부재 시에는 그 전결사항은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재위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경미한 것은 차하위자에게 재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특수한 사항은 제4조 2항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휘감독) 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

회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7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2009년 07월 16일 개정

<별표>

위임전결 사항

전 결 업 무	회 장	전 결 권 자			
		부 회 장	전 임 이 사	사 무 국 장	과 장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	○				
2. 직제 및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3. 예산의 변경	○				
4. 내규 및 주요한 지침 제정	○				
5. 직인 사용에 관한 사항				○	
6. 법인등기의 변경	○				
7. 법인등기 증명 발급				○	
8. 사무국 직원의 연봉, 퇴직금, 복리후생비에 관한 결정	○				
9. 기본방침 및 지출원인행위가 결정된 수입 및 지출 행위 집행			○		
10. 사무국 직원의 국내출장 명령과 휴가 허가			○		
11.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12. 모든 지출원인행위	○				
13. 계약(용역)	○				
14. 정기간행물 및 제 도서의 발송 방침				○	
15. 문서보존기간 변경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16. 원고청탁, 심사, 교정 등의 의뢰				○	
17. 삭제					
18. 학회지 발간	○				
19. 회원사 및 회원에 자료협조요청 및 광고게재 안내	○				
20. 연구사업과 전문위원회 활동계획 승인 및 실행	○				
21. 회원사 및 회원에 광고료 및 회비 청구				○	
22. 국내외 학술교류 협정 및 시행	○				